

##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건의에 대한 회신

우리협회가 지난 1월 26일 정부 관련부처 · 국회 · 금융기관 등에 건의한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회신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서 보내왔다. 이에 회신내용을 입수해 전재한다. — 편집자주 —

### 한국통신

건의 내용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의 예외인정권자를 한은 총재에서 여신취급은 행장으로 하부 위임하고 예외인정 대상에 정보산업에 대한 여신을 포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행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의 예외인정은 업종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 정보산업분야 중소기업여신도 동 예외허용 대상에 포함 (사차성 소비, 투기조장 가능성 있는 부동산은 취득 금지).</li><li>○ 정보산업분야 대기업 여신에 대하여 특별히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여타(제조업등)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쇄적인 예외인정요구 유발로 부작용 우려.</li><li>○ 제반 금융 ·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데로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보산업의 전산센터(연구 · 사무용 건물)를 제조업체의 공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는 토지매입자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6개월이내 착공될 공장건설용 토지매입자금은 예외적으로 여신취급 허용(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환).</li><li>○ 정보산업의 전산센터를 제조업체 공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토지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에 어려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조업대출지도비율 산정 시 S/W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을 제조업 대출로 인정 또는 제조업대출지도비율 제도 폐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리 경제 여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제조업대출지도비율 폐지 곤란. 또한 S/W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대출로 인정하는 방안은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 감안할 때 수용에 어려움.</li><li>○ 제반 금융 · 경제여건의 개선추이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대출지도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li></ul>

## 자료열람실

건의 내용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산업에 대한 평가기준표 별도 제정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체종합평가지표는 상업어음할인의 적격업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전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표준화, 객관화한 것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평가표 제정은 곤란(각 금융기관의 업체 신용도 평가, 여신금리 결정등에 사용하는 평가표는 각 금융기관 자율적 운용 사항임).</li> <li>○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성장성이나 기술개발능력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여신금리 차등 결정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총액 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의 범위 제한 규정의 폐지(정보산업 등 업종간의 어음 할인이 가능토록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산업관련 재할인 대상 상업어음을 실물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음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ガ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송·창고 및 통신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직접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li> <li>○ '94. 3월부터 정책금융의 축소·정비를 통하여 재할인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코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방식을 자동재할인 방식에서 총액대출제로 전환하고 이 제도도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임.</li> <li>○ 총액대출관련 상업어음의 범위 확대는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보유 상업어음의 전액 무담보 할인에 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서는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할인채원의 제약등으로 모든 진성 어음을 전액 할인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어음의 신용취급 여부는 어음관련업체의 신용도, 동 업체와의 거래관계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한국은행이 전액 할인하도록 제도화하기는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산업부문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출범에 따른 무역금융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무역금융의 축소·폐지 또는 일반금융으로의 전환 불가피하며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맞춰 정책금융 축소, 정비계획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li> <li>○ 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외화대출 용자대상 시설재에 포함시키는 한편, 동 기술도입에 따른 해외자금 로얄티 및 용역비에 대해서도 외화대출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내용년수 산정이 불가능하며 제품생산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모호성으로 시설재 범주에 포함시켜 외화대출 허용은 곤란(현재 첨단기기등에 장착되어 수입되는 S/W는 시설재 소요가격에 포함하여 외화대출 용자수혜가 가능함).</li> <li>○ 외화대출은 시설자금등 주로 중장기 외화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로얄티 및 용역비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운용 취지에 어긋나고 용자 및 사후관리기준 설정에 곤란하므로 수용 불가.</li> </ul>

## 자료열람실

건의 내용	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규정(시행세칙)&gt; 관련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업종에 대하여 규정적용 배제등 포괄적 예외허용은 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업종간 형평성 시비 소지가 있어 수용 곤란.</li> <li>○ 여신관리대상기업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는 정부의 &lt;신경제 5개년계획&gt;상의 추진일정에 따라 '94~'96년중 폐지 예정, 현행 규정상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금지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로 예외인정 가능.</li> </ul>

### 재정경제원

건의 내용	회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제도의 개선 : 리스대상에 “시설, 설비, 기계, 기구”에 추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포함</li> </ul>	<p>수용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소유권의 일종인 소프트웨어의 리스는 리스사에 이용기업의 배타적 사용에 대하여 과도한 감독책임을 발생케 하고, 리스사의 소유권확보 및 리스기간설정이 곤란하여 리스대상으로는 부적절.</li> <li>○ 리스대상물건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됨. 지금도 설비이용과 직접 관련되어 설비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예, O/S)는 설비가격에 포함하여 리스를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상향 조정</li> <li>- 부동산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의 성장성 및 신용도에 의거하여 보증지원</li> </ul> </li> </ul>	<p>현행으로 충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제조업과 차등을 두어 운용하는 것은 형평상 곤란.</li> <li>○ 기업의 부동산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성장성, 시장성,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음.</li> <li>○ 정식심사기준표상 담보력평가항목은 기업체의 상환능력평가상 별별항목의 하나로서 전체평가요소의 5%에 불과하고 동 항목은 어느 업종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정보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캐피탈의 확대 : 투자위주의 자금지원패턴으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및 조건부융자위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현재 90%정도인 융자비율을 축소)</li> </ul> </li> </ul>	<p>장기적으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 현실적 위험때문에 가급적 안전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별 벤처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여부는 벤처캐피탈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신기술금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금운용이 가급적 투자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li> </ul>

## 자료열람실

건의 내용	회 신
○ 벤처캐피탈 확대 :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유도	수용곤란 ○ 유망산업의 판단은 벤처캐피탈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정부가 특정 산업에 치중하여 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벤처캐피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고 산업의 원활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벤처캐피탈 확대 : 담보위주의 자금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용대출로 이행	장기적으로 검토 ○ 벤처비즈니스는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아 이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점을 고려,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제도와 함께 벤처캐피탈제도(신기술사업금융회사제도)를 둔 것임. ○ 신기술금융사의 업무영위방식은 원칙적으로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사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의 요건도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현실적으로 보아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급적 신용위주의 대출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신용보증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 리스제도의 개선(또는 정보산업 전문리스제 도입) - 정보산업의 발전단계,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집중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정보산업의 무지원비율 신설	수용곤란 ○ 의무지원비율제도 등 선별금융제도는 규제완화 및 리스사 자율성제고 차원에서 삭제 내지 완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의무지원비율 신설은 곤란. ○ 정보산업 전문리스제는 특정 분야 시설만 취급하는 리스사를 설립하자는 것으로 리스사간 과당경쟁으로 리스사의 건전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리스사에서도 정보산업 기기의 리스를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이 불필요한 사안임.

### 계간 「멀티월드」 구독신청

21세기 정보사회를 새롭게 주도해 나갈 멀티미디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멀티미디어 협의회는 멀티미디어 관련 정보를 교환, 공유함으로서 멀티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95년 5월(봄호)부터 계간 "멀티월드"(비매품)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멀티미디어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께서는 정기구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협회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서[성명, 인수처 주소(우편번호 포함), 회사명, 부서명, 직급, 연락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계간 「멀티월드」 담당자 (전화 : 5131-114 / 팩스 : 5131-112~3)